

한국균학회 균학용어심의위원회 규정(2012. 10. 11. 개정)

제 1 조 (설치) 본회 회칙 제 7장 제 27조 근거하여 균학용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목적) 위원회는 균학용어*를 관장하고 이를 표준화, 대중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균학용어는 균학에 관련된 한글용어를 뜻하며 균류의 우리말 이름을 포함한다.

제 3 조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 간사 1인, 위원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학용어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온라인 균학용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위원장을 보필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균학용어를 검토하고, 심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균학용어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균학용어를 제안, 심의, 의결, 관리한다.

② 저서,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균학용어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균학용어의 제안, 심의 및 의결) ① 온라인 균학용어의 근간 : 균류학용어집(윤권상 등, 2007. 한국균학회)의 용어를 근간으로 하여 추가, 보완 및 수정한다.

② 균학용어 추가, 수정의 제안 : 온라인 균학용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제정 또는 수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수정 제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나, 심의위원회 구성원(위원장, 간사, 위원) 전원이 수정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균학용어 심의 :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기간 전일까지 온라인 균학용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용어를 심의하며, 심의 내용은 심의위원들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용어에 대한 심의는 매년 전반기(춘계학술대회 전후)와 후반기(추계학술대회 전후)에 2회 실시하며 심의기간은 간사가 심의기간 15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단, 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이외의 기간에도 심의할 수 있다.

④ 균학용어의 의결 :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⑤ 심의 결과의 반영 :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간사는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학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군학용어에 반영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포함한 심의과정의 전산문서는 5년간 보존한다.

제 7 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 8 조 (보고) 당해년도에 수정 및 추가된 군학용어는 정기총회 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한국군학회 소식지에 게재한다.

제 9 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24. 01. 15)